

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대관운영 세칙

제정 2024.05.02.

개정 2024.06.20.

개정 2024.11.09.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(이하 “협회관”)의 기본시설(지하대강당, 3층 소회의실, 4층 교육장 등), 기타 설비와 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「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대관운영 세칙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대관(貸館)”이라 함은 협회관의 기본시설, 기타 설비와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.

② “사용료”라 함은 협회관의 기본시설, 기타 설비와 장비를 대관함에 따라 협회가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③ “사용자”라 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협회관의 기본시설, 기타 설비와 장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.

제3조(회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협회는 협회관에 대한 대관 관련 업무를 위하여 회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, 행정부회장(위원장), 총무이사, 재무이사, 법제이사,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.

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조(대관 신청) ① 기본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관 사무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[별지 제1호 서식/별지 제2호 서식]에 의한 협회관 대관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)

② 대관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한다.

③ 대관 취소나 변경을 원할 시에는 [별지 제3호 서식]을 작성하여 대관예정일 7일 전까지 이메일로 접수한다.

④ 그 밖에 시설의 운영목적과 관련있는 업무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대관 신청의 제한, 사용취소 및 자격정지) ①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-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교육
- 특정제품의 선전·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본 내규(세칙)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- 그 밖에 시설의 운영목적과 관련없는 업무로 위원회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주간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승인을 취소,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,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협회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대관 승인 후 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
2. 협회가 지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

제6조(대관 승인 우선순위) ① 대관 일정이 중복되면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심의·결정 한다.

1. 협회 중앙회 일정
2. 접수일 순서(지정기일 내에 대관료 납부완료 된 기준)

② 단, 제6조 1항 1호에도 불구하고 3층 소회의실은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, 4층 교육장은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에 우선권이 있다.

제7조(사용시간) ① 협회관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오전 09:00부터 12:00까지 (3시간)
2. 오후 13:00부터 18:00까지 (5시간)
3. 종일 09:00부터 18:00까지 (9시간)

② 이 외의 시간에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후 대관할 수 있다.

제8조(사용료 및 납부) ① 사용료는 [별표 1]에 기준하여 징수한다.

② 사용료는 전액을 대관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자재 사용 및 관리)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기자재가 고장 혹은 파손되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리비 등을 사용자 측에서 부담한다.

제10조(규정의 사항)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이 세칙의 해석에 관해서는 협회의 해석에 따른다.

부 칙

1. 이 세칙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2. 다만, 협회관 시설 대관 및 기타 설비 사용료 [별표 1]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.

[별표1]

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대강당 및 회의실 대관료 안내

1. 대관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.(문의 : kamt@daum.net/02-3291-5435)
2. 대관 신청은 대관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,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.
*예시 : 7월 13일(토)에 대관이 필요할 경우 5월 1일부터 접수 가능
3. 신청서를 작성 후 **비즈메카 협조공문(중앙회 발신)로 제출**해주세요.
*비회원 대관의 경우 **메일(kamt@daum.net) 접수**
4.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뒤 최종승인 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.
5. 사용료는 행사 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.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6. 신청서에 기재한 시간 이외의 추가사용분이 발생할 경우 행사 종료 이후 별도 정산됩니다.
7. 모든 장소는 **도시락 반입이 불가**합니다.(간단한 다과류만 이용 가능)
8. 사용 종료 이후 사용 전 상태로 **정리정돈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집기류 및 책상 배열 원위치, 조명 및 냉난방기 전원 OFF, 쓰레기 정리 등)

회의실명		지하 대강당*	3층 회의실	4층 교육장
최대수용인원		120명	30명	25명
사용료** (기자재 사용료 포함)	회원 (임상병리사)	1시간당 50,000원 (예. 4시간 200,000원 / 8시간 400,000원)	무료대관	
	비회원 (임상병리사가 아닌 자)	1시간당 200,000원 (예. 4시간 800,000원 / 8시간 1,600,000원)		

*지하 대강당 : 최소 사용시간 2시간 이상

*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분과학회의 경우 전체 무료 대관

*시도회 및 분과학회 주관 회원 교육의 경우 전체 무료 대관(단, 1회 사용 시 청소용역비 50,000원을 지급한다.)

[별지 제3호 서식]

대관 취소(변경) 신청서

(일정 변경, 대관목적 변경, 대관 취소)

I 기본정보

단체명	담당자 (실무자)	이동전화
대관장소		이메일
행사명		
신청기간	년 월 일 ~	년 월 일

II 변경사항

<input type="checkbox"/> 일정 변경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관목적 변경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관 취소
변경 전		
변경 후		
사유		

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관에 대한 변경(취소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(인)

(사)대한임상병리사협회 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

대관 불가 통보서

귀하

귀하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협회관 대관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행 사 명

행 사 장 소

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~ 년 월 일 시 (일 시간)

불 가 사 유

년 월 일

(사)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